

<p>지연배상금 률</p>	<p>지연배상금률은 제 1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단,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()%로 합니다.</p> <p>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()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()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()%</p>	<p>지연배상금 률</p>	<p>지연배상금률은 제 1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)%로 합니다.</p>	<p>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</p>
<p>이자,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p>	<p>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</p>	<p>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</p>	<p>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</p>	<p>수수료 문구 삭제</p>
<p>여신실행 방법</p>	<p>□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 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 □ 기타 ()</p>	<p>여신실행 방법</p>	<p>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.</p>	<p>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</p>
<p>상환방법</p>	<p>□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 □ 여신개시일로부터 ()년 ()개월 동안 거치하고, ()년 ()월 ()일부터 매 ()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. □ 자유로이 상환하되, 1 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,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(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) □기타 ()</p> <p>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상환방법</p>	<p>□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 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업무 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</p>

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	□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.
	□ 여신실행시에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.
	□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()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()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.
	□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.
	□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
	□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. (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)
□ 기타 ()	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

①~③ (기재생략)

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~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
(기재생략)

동반성장론(일반) 추가 약정서 (1 차협력기업용)

제 1 조 (목적) ~ 제 12 조 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
(기재생략)

(신설)

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	□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.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~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
(현행과 같음)

동반성장론(일반) 추가 약정서 (1 차협력기업용)

제 1 조 (목적) ~ 제 12 조 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
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지연이자 수취)
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
“상생협력법)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하도급법)」에 따라

업무 절차에 따
른 문구 수정

금감원 요청에
따른 「상생협력
법」, 「하도급법」

<p>제 13 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기재생략)</p> <p>제 14 조 (면책) (기재생략)</p> <p>제 15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</p> <p>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</p> <p>제 14 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5 조 (면책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6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안내 문구 판매 기업 약관 기재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
---	--	--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2월 31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